문서번호	도시철도설계부-3091	★주무관	도시철도설계부장	도시철도국경
보존기간	3년			
결재일자	2010.04.09.			
공개여부	공개		 시설안전국장	
방침번호	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 제(145)호	협조	안전팀장	





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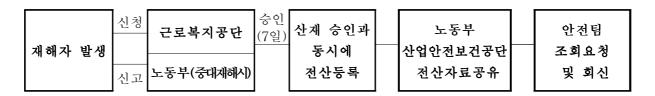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(도시철도설계부)

공사장 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 보고

본부 건설공사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재해발생 시 보고지연 등으로 실시간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되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🔲 재해 관리 흐름도



- 본부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을 신청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 후 승인을하고 전산에 등록하 여,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현황을 관리하고
- 본부에서는 공단의 재해현황을 제공받아 재해율을 관리

■ 재해현황 파악에 따른 문제점

-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재해현황 파악에는 산업재해 승 인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산재발 생 즉시 파악이 어려움이 있으며
-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도 본부에 미 보고시 산업안전보건공 단에서 자료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(평균 1.5개월 정도)이 소 요되어 사고원인 조사 및 횡단전개를 통한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가 곤란함

■ 개선방안

- 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현장 책임감리원은 따로붙임 보고양식에 의거 담당부서 및 안전팀에 의거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토록 지 시
 - 주요재해에 대하여는 안전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필요시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전 현장에 횡단전개 실시
 - 재해에 대한 보고지연시 일반 재해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, 2회 위반시 및 중대재해 보고 지연시에는 『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(부실측 정)』의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 부과 조치

■ 행정사항

● 본 방침을 각부서에 통보하여 현장에서 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 가 이루어 지도록 시행하고, 각 공사장 감리단장에게도 재해발 생 즉시 보고하도록 본부장 지시사항으로 하달 하고자 합니다.

따로붙임: 1. 재해 발생현황 보고양식 1부. 끝.